

Q & A

저수조 수질검사 관련

Q 수도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매년 1회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수도법 제83조(벌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해당되는 저수조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는 6개월마다 청소, 1개월마다 위생상태점검, 1년마다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제6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수질 TMS 유량전송 방식 관련 문의

Q 수질 TMS 유량 전송 방식과 일부 사항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처리된 물을 방류조에서 Pump를 이용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구가 2개소로 각각의 방류구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TMS 유량 전송을 각각의 유량값을 전송해야 하는지요? 또는 현장 System에서 유량값을 합산하여 전송해야 하는지요? 또한 수질 TMS ROOM 출입문에도 개폐 신호를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현재 출입문에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음) 마지막으로 전원 신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UPS MAIN 전원 단절 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는지요?

A 동일한 처리공정에서 처리된 물을 펌핑하여 다른 방류구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각각의 방류구에서 측정된 유량값을 하나의 자료수집장치로 보낸 후 합산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로 전송하여야 하며, 수질오염공정

|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방법 통신표준규격에 따라 출입문 개폐여부, 입력전원단절, 자동채수장치정보(온도, 채수병 위치, 개폐)를 관계센터의 요청시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질의

Q 저희 회사에서 탈수기를 설치하고자 소음진동배출시설명에 알아보았으나 더 자세한 질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탈수기(일반 세탁기 탈수 원리)는 40~50마력의 인버터를 사용하는것(2대)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지금 저희가 콤프레샤를 설치하면서 소음진동배출시설신고(100HP)를 한 상태이고 위에 경우처럼 탈수기가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질의를 합니다.

A 세탁기의 탈수원리는 원심력에 의한 것으로 원심분리기로 보아 20마력 이상일 경우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배출시설의 규모를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이 되므로 귀하의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악취배출시설 및 자가측정에 대하여

Q 악취배출시설(기초유기화학물 제조시설)로서, 지정악취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치법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의 경우는 악취배출시설의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지정악취물질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흡착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악취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자가 측정의 의무는 따로 없는 것인지요?
- 2) 악취 배출시설에는 포함이 되나 배출시설이 밀폐탱크(혼합탱크)로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

으며,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밀폐탱크에 부착된 배관을 통하여 자연압으로 흡착에 의한 시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규칙별표 2의2 (비고) 1.(위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포함되어 악취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1) 악취방지법 규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의 자가 측정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악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1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이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악취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악취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여부

Q 사업체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기물(폐합성수지,음식물,등등)을 위탁처리시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유로 새로운 수집.운반,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리방법은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관할시청 담당자와 대화하였으나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변경신고 해당유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안해도 되는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각호의 1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처리업체)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활성탄 교체 주기 변경

Q 사업장의 활성탄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시설의 경우 당시의 설비운영조건이나 오염물질

의 예측치로 활성탄 교체주기를 산정하였으나 지금 실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값이 다를 경우 활성탄교체주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지요?

A 1) 활성탄 교체주기와 관련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에 교체주기가 있다면 교체주기를 지켜야 할 것이며, 활성탄의 교체주기는 허가증에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첨부서류 중 방지시설내역(용량산출서)에 오염물질 농도, 활성탄의 흡착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교체주기를 제출하였으므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이 변경되어 활성탄 교체주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변경신고 등)을 받아 활성탄 교체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활성탄 교체주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처리가스량, 오염물질의 농도, 활성탄의 흡착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성탄 교체주기를 재산정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독물 옥외저장시설 지하공간 활용가능여부

Q 공장에서 액상의 유독물을 출하전 드럼용기에 포장하여 보관 하고자 옥외유독물보관시설로 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부지면적이 협소한 문제로 해당 유독물옥외보관시설의 하부(지하)에 용수 저류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용수 저류조는 공장내 열공급시설에 사용되는 용수를 보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A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독물 유출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하공간의 활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용수 저류조 설치가 지반침하 등을 야기하여 취급시설의 안전성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지하에 저류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